

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 자격기준 안내

제 3조(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자격기준)

본 학회의 정회원으로로서 다음 각 항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

- 1) 정신건강 관련분야 석사학위(혹은 전문의)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
- 2) 정신건강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(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두 등급 이상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최상위 자격증 소지자)
- 3)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자
- 4)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인지행동적 사례개념화가 포함된 치료종결사례를 제출한 자
- 5)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및 면접을 통과한 자

<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자격기준과 관련한 시행세칙 >

- 1) 2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이라 함은, 최근 2년을 기준으로 10회기 이상의 5례 이상의 개인치료를 한 경우를 말한다. 단, 10회기 이상의 집단치료는 2례만 인정할 수 있다.
- 2) 전문가 자격시험에 지원하는 자는 본 학회의 응시원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3)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활동이라 함은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한다.
 - 가) 본 학회지에 제 1저자나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는 것
 - 나) 본 학회에서 학술발표(구연) 또는 사례발표를 하거나 워크샵을 주도하는 것
 - 다)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에 4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것.
단, 20시간은 대학원 인지행동치료 강좌나 외부교육 참석으로 대체가능

* 외부교육은 주최하는 기관에서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2인 이상이 진행하는 인지행동치료 관련 및 교육 및 워크샵을 의미한다.
- 라)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저서 혹은 역서의 대표저자/역자(출판물은 자격위원회에서 심사)
- 마) 전문학술지에 제 1저자나 교신저자로 인지행동치료 관련 논문을 2편 이상 게재하는 것
- 4) 치료종결사례는 본 학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 회기 수퍼비전 싸인이 있는 축어록 및 녹음(혹은 녹화)제출 혹은 한~다섯 사례 중 10회기 인지행동치료 전문가에게 수퍼비전을 받은 확인서 및 내용 요약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- * 주의사항 : 축어록 및 녹음(혹은 녹화)은 개인관련 정보를 삭제하여 제출
- 5) 자격심사 및 면접의 통과는 자격심사위원회의 2/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.

<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자격 특별 시행세칙 >

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자격 특별 시행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~ 2027년 2월 28일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전문가 자격증 수여를 위해 시행한다.

정신건강 관련 분야의 최상위 자격 취득 이후 인지행동치료 교육 및 실무경력 최소 5년 이상인 본 학회의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으로서는 다음 각 항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

1) 본 학회에서 인지행동치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자로 다음 중 두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.

가) 본 학회지에 제 1저자나 교신 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는 것

나) 본 학회에서 학술발표(구연) 또는 사례발표를 하거나 워크샵을 주도하는 것

다)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에 4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것. 단, 20시간은 대학원 인지행동치료 강좌나 외부교육 참석으로 대체가능

* 외부교육은 주체하는 기관에서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2인 이상이 진행하는 인지행동치료 관련 교육 및 워크샵을 의미한다.

라)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저서 혹은 역서를 대표저자/역자로서 출판하는 것(출판물은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)

마) 전문학술지에 제 1저자나 교신 저자로 인지치료, 인지행동치료, 마음 챙김 기반 연구 및 치료 (MBCT, ACT, DBT, MBSR, CFT 등) 논문 2편 이상 게재하는 것.

2) 대학교 또는 수련병원에서 인지행동치료 관련 강의를 2학기 이상 하거나 전공의 및 수련생 대상 인지행동치료 슈퍼비전을 1년 이상 제공한 자로 이에 대한 증명서 (강의계획서, 병원과장 확인서, 학과장 확인서, 학회장 확인서 등의 공식 문서)를 제출하는 자.

3)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전문가로부터 추천서 2부를 제출한 자

4)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 및 면접심사를 통과한 자. 단, 면접시험은 인지행동치료 교육 및 실무 경력에 관한 것이며 자격심사 및 면접시험의 통과는 자격심사위원회의 2/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 4조(인지행동치료사 자격기준)

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

- 1) 정신건강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정신건강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(등급 불문)로서 1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(1년의 임상경력은 인지행동치료 전문가의 지도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함)
- 2)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
- 3)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치료종결사례를 제출한 자
- 4)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및 면접을 통과한 자

<인지행동치료사 자격기준과 관련한 시행세칙>

- 1) 1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이라 함은, 최근 3년을 기준으로 10회기 이상의 3례 이상의 개인치료를 한 경우를 말한다. 단, 10회기 이상의 집단치료는 1례만 인정할 수 있다.
- 2) 전문가의 지도감독이라 함은 전문가에게 10회기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았음을 의미한다.
- 3) 치료사 자격시험에 지원하는 자는 본 학회의 응시원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4)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교육의 이수라 함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에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. 5) 치료종결사례는 본 학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 회기의 축어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6) 자격심사 및 면접의 통과는 자격심사위원회의 2/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

✓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 전문은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홈페이지(www.kacbt.org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